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0

제출년월일 : 2000. 12.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법령에 맞게 시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 (안 제41조 내지 제51조)

ㅇ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나.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

ㅇ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안 제37조제1항1의2호 신설)

※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시행시기 : 2001. 7. 1
- 세수감소 추계 : 연간 987백만원(전국 324,800백만원)

ㅇ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 납부 세액 변경

납세의무자가 1분기 자동차세를 3월에, 2분기 자동차세를 9월에 분납 하고자 할 경우 년세액의 4분의1의 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각 기분 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변경(안 제38조)

ㅇ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안 제40조의3)

다.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

ㅇ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55조)

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기준시점 변경

ㅇ 2001년 1월 1일(현행 :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조례 제330호(2000.5.22) 부칙 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시·도 세정과장 회의서류 송부(2000. 11. 6도세정 13430-12288) 공문사본 1부.

나. 지방세(시·군세)조례 개정자료 송부(2000. 12. 11도세정 13430-12589) 공문사본 1부.

다.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하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다음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leq n \leq 12$)

제38조제1항 본분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로,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3 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절의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3조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제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의 제목 "농지의 변동신고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농업소득세는" 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중 "460원"을 "510원" 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영 제194조의14"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로 한다.

조례 제330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3항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
제1절 총 칙	제1절 ·····
제3조(세목) ①<생략>	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 농지세	5. 농업소득세
6.~8.<생략>	6.~8.<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2장 보 통 세	제2장 ·····
제1절 주 민 세	제1절 ·····
제18조(납세의무자) ①<생략>	제18조(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②····· ·····농업소득세····· ·····
제20조(세율) ①<생략>	제20조(세율) ①<현행과 같음>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제21조(신고납부) ①····· ····· ····· ····· ·····4월 ·····

현 행	개 정 안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은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 …… …… …… ……1월 …… …… 〈단서 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3절 자동차세	제3절 ……
제37조(과세표준의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생략> <신 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 …… 1.<현행과 같음>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세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
<납기표 생략>	<납기표 현행과 같음>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3절의2 주행세	제3절의2 ……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3(세율) ①…… 1,000분의 115 ……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현 행	개 정 안
	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절 농지세	제4절 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의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농업소득세 …… ……농업소득금액 …… …… …… ……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농업소득세 … …… …… …… …… …… …… …… …… ……
제44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 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현 행	개 정 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 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다음"생략>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 …… …… ……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
제48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②농지세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48조 <삭 제>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9조(수시부과) ……농업소득세는…… …… …… …… ……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13조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농지조사위원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5절 ……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세율) ①……
1. 흡연용의 제조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가. ……510원.……
나.~라. <생략>	나.~라.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절 종합토지세	제7절 ……
제72조(납세의무자) ① <생략>	제72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현 행	개 정 안
발법에 의한 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과세표준) ① <생략>	제73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2000.5.22 조례 제330호)	부 칙(2000.5.22 조례 제330호)
①~② <생 략>	①~② <생 략>
③(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승용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③(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

현 행	개 정 안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2001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 …… ……
2~ 3<생 략>	2~ 3<현행과 같음>
④ 〈 생 략 〉	④ 〈 현행과 같음 〉

위대한 경북 회계 만들 수 있다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 (053)950 - 2311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진순 사무관 박헌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30-12288

시행일자 2000.11.06 (3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기획감사 감 장관 법무감사 [illegible]

받 음 시장.군수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람	시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0. 11. 6	결재·공람	부시장 [illegible]
	번호	5881		행정자치국장 [illegible]
처리과		세무과		세무과장 [illegible]
담당자		박찬근		도세팀장 [illegible]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시.도 세정과장 회의서류 송부

2000. 11. 3(금)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 회의서류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도 세정과장 회의서류 1 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illegible]

시·도 세정과장 회의
2000. 11. 3. (금)

회 의 서 류

행 정 자 치 부

시·도세 및 시·군·구세 조례

개 정 자 료

ㅇ 이 자료는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시·도세 및 시·군·구세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ㅇ 이 자료의 시·도세 및 시·군·구세 조례 개정(안)은 예시로서 제시한 참고자료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개정 지방세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안을 재정리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람

조례개정이 필요한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사항

1.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시세 및 시·군세)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2. 지방교육세 신설 및 세율상향 조정(시·도세)

○ 종전에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오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상향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시·도세)

○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4.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 (시세 및 시·군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5.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시세 및 시·군세)

○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함(법 제229조)

《○○시(군)세조례》

현 행	개 정
제3조(세목)	제3조(세목)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5. 농지세	5. 농업소득세
6.~8.(생 략)	6.~8.(현행과 같음)
제18조(납세의무자)	제18조(납세의무자)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②----------농업소득세----------.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	제53(신고납부) ①----------4월----------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 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 ---------- ----------1월----- ----------.(단서 현행과 같음)
제27조(세율)	제27조(세율)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당해 시·군이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 ---------- ---------- ---------- ----------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생 략)	1.(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 n ≤ 12)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3(세율) ①---------- ---------- 1,000분의 115------.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5절 농지세	제5절 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이하 이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 --농업소득세---------- ---------- ---------- ---------- ----------농업소득금액----- ----------

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 -------.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 ------농업소득세---------- ---------- ---------- ---------- ---------- ---------- ---------- ---------- ---------- ---------- -----.
제44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 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 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생략)	다음과 같다.(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②농업소득세----------

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소득세----------농업소득세----------
제48조(중간예납)	제48조(중간예납)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군수)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생략)	②농업소득세----------농업소득----------농업소득세액----------.(현행과 같음)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8조(수시부과) ----------농업소득세----------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

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군)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 ---------- ----------.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세율) ①---------- ----------.
1. 흡연용의 제조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가. ----------510원. ---------- ---------- ----------
제72조(납세의무자)	제72조(납세의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	②----------

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	----------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5.(생 략)	1.~5.(현행과 같음)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 ---------- ---------- ---------- ---------- ---------- ----------
제73조(과세표준)	제73조(과세표준)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②----------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목	시.군세 조례 표준(안) 수정		
게시자	세정담당.최현찬[직원]	게시판	공용게시판
게시일	2000.11.14 09:43	종료일	2000.12.21 23:59

시.군 세무과 시.군세 조례담당자 귀하

시.군세 조례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니 조례개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조례 수정사항 1부 끝

* 본 게시안을 접수한 시.군에서는 도 세정계(23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찬

첨부명	파일크기	실행파일이름
조례대비표.hwp	24606	조례대비~.hwp

○○도○○시 · 군세조례(안)

현 행	변 경 안	변 경 사 유
제48조(중간예납) ①(생략)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군수)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생략)	제48조(중간예납) <삭제>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 제도는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시.군세 조례 ①,②항을 삭제함
제49조(수시부과)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9조(수시부과)----------농업소득세는-- (삭제) ---------- ---------- ---------- ---------- ----------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삭제를 요망함

※ 시.도 세정과장 회의서류 40page입니다

"위대한 경북의 생각"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 - 2311 /FAX (053)950 - 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진순 사무관 박헌규 담당자 최현찬

문서번호 세정13400-12589
시행일자 2000.12.11 (5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받 음 시장.군수
참 조 지방세담당과장

선람	과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0. 12. 11	결재·공람	세정담당
	번호	64284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방세(시.군세) 조례 개정자료 송부

지방세법개정(안)이 2000. 12. 6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기에 지방세(시.군세)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군세 조례개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세(시.군세)조례 개정자료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은 국민들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심의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함(법 제111조 제6항 · 제8항)

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함(법 제196조의6제1항)

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법안 부칙 제9조 신설)

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분류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분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2001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율 적용규정을 삭제함(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

<○○시(군)세조례>

현 행	개 정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일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 ---------- ---------- ---------- ---------- ---------- ---------- --------.
(납기표 생략)	(납기표 현행과 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부칙('99.12월말 개정조례)	부칙('99.12월말 개정조례)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2001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2.·3.(생 략)	2.·3.(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발췌)

【지방세법】

제4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98. 12. 31 개정)

제196조의17(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93으로 한다.

②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0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해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종전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포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4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법위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업소득금액에서 년56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06조(세액의 계산 및 안분) ① 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2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

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9조(결정과 징수) ① 시장·군수는 제208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②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8조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10조(수시부과) ①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할 경우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확정결정할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지방세법시행시행령】

제143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법 제196조의 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56조(수입금액의 계상등) 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

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양곡 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기타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대장과 농업소득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경우에는 그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59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자본용역비

12. 임차료
13. 광열비

②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제164조(신고와 납부) ①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 확정신고는 작물재배지· 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2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는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 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 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업소득세 납부서에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4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①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는 농지소재지·농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는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농지의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한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지세자진납부서에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한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농지소재기 관한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7조(농지의 변동신고)법 제2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변동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가 농지외의 농지로 되거나 농지외의 토지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3조(비과세신청)①령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80호

○ 의 안 명 :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2. 제안이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법령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안 제41조 내지 제51조)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나.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안 제37조 제1항1의2호 신설)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연수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시행시기 : 2001. 7. 1

- 세수감소 추계 : 연간 987백만원(전국 324,800백만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 납부 세액 변경
납세의무자가 1분기 자동차세를 3월에, 2분기 자동차세를 9월에 분납 하고자 할 경우 년세액의 4분의1의 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각 기분 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변경(안 제38조)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안 제40조의3)

다.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

·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55조)

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기준시점 변경

· 2001년 1월 1일(현행 :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조례 제330호(2000. 5. 22) 부칙 제3항)

4. 검토의견

○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18조 제2항 중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 안 제20조 제2항 제3호 중
- "농지세할"을 "농업소득세할"로 하고, "농지세액"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하고

· 안 제21조 제1항 중
-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 안 제37조 제1항 1의2 신설 - 새차·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시행시기 : 2001. 7. 1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연수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세수감소 추계 : 연간 987백만원

· 안 제38조 제1항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 납부 세액 변경
  납세의무자가 1분기 자동차세를 3월에, 2분기 자동차세를 9월에 분납 하고자 할 경우 년세액의 4분의1의 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각 기분 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변경함

· 안 제40조의3
- 주행세의 세율 상향조정(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세원확보)
-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 시행시기 : 2001. 7 . 1

· 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중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수정함.

· 안 제48조 - 농업소득세 중간예납규정 삭제

· 안 제55조 -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함.

· 조례 제330호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항 본문 중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 동항 제1호 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며,
· 2000. 11. 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례개정에 필요한 지방세법 주요개정사항이 시달되었으며,
· 시세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새차·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며,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12.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